

Ⅱ. 學校 保健奉仕

1. 건강평가
(학교보건법 및 동시행령 참조)
2. 건강상담
3. 건강관찰
4. 전염병 관리
(전염병 예방법 참조)
5. 결핵관리
(결핵 예방법 참조)
6. 보건실



II. 學校 保健奉仕

1. 건강평가

학교인구 특히 학생의 성장 및 발육, 건강관리 등을 위한 건강평가는 건강관찰→건강평가→건강상담의 절차의 하나로써 학교 보건법(제7·8·9, 10, 11조)과 학교 신체검사 규정(문교부령 제294호, 1972.5.1 개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학교 신체검사의 목적

제 1 조

학교는 학생 및 교원의 신체의 질병 및 기타 결함 발견, 예방, 간이치료, 건강증진, 체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영에 의한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2) 신체검사의 종류

제 2 조

학교 신체검사는 학생의 체격검사·체질검사·체력검사 및 교원의 체격검사, 체질검사를 포함한다(개정 문교부령 제281호)

(3) 신체검사 담당자

제 3 조

학교 신체검사는 이 영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매년 5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실시하되 체격검사와 체력검사는 학교 직원·양호교사로써 이를 겸사케하고 체질검사 및 질병 유무는 학교 축탁의사로써 이를 검사케 한다. 다만, 체력검사는 시·도교육위원회 교육감이 필요에 따라 따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문교부령 제281·294호).

학교 축탁의사가 없을 때 또는 학교 축탁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때에는 해당 지구 보건지사 또는 임시축탁의사로서 이를 검사케할 수 있다.

(4) 체격검사와 체질검사

제 4 조

신체검사 중 체격검사 및 체질검사는 다음에 적은 항목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키·몸무게·가슴둘레·앉은키·영양·등심대·가슴통·눈·귀·코·목·피부·이·기타의 질병과 이상·기관 능력·심장·신경계통·정신상

태, 전항에 계기한 항목 이외에 있어서도 학교 축탁의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검사 방법

제 5 조

전조의 신체검사는 다음에 적은 각호에 준거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키·가슴둘레·앉은키는“(m)” 몸무게는“kg”을 단위로 하여 반올림법으로 단위의 2위까지 계산하기로 한다.

② 키는 신을 벗고 두 발꿈치를 붙이고 등·궁둥이부 및 발꿈치부를 자매에 꼭 대고 고추서서 두 팔을 몸 옆에 자연스럽게 펴고 머리부를 빠르게 측정한다.

③ 몸무게를 옷 입은 채로 측정할 때에는 그 의복의 무게를 제한한다.

④ 가슴둘레는 선 자세로서 두 팔을 자연스럽게 펴고, 등쪽은 견갑골직하부, 앞가슴은 젖꼭지의 직상부에 줄자를 대고 안정호기가 끝나는데에 이를 측정한다.

⑤ 앉은키는 결상에 바로 앉아 뒷 몸을 곧게 하는 키의 측정방법에 준하여 앉은 면서부터 머리까지의 높이를 측정한다.

⑥ 영양은 피부의 색채, 피하지방의 충실, 근육의 발달 등에 대하여 검사한다. 영양상태가 표준 이하로서 보건상 주의를 요할 때에는“요주의”라 하고 별 이상이 없을 때에는“양”이라고 기입한다.

⑦ 등심대는 형태 및 질병에 대하여 검사한다. 형태는 생리적 만곡을 갖는 자를“정”이라 하고 이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만·후만·측만으로 구분한다.

⑧ 가슴통은 형태 및 발육에 대하여 검사한다. 가슴통에 이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편평흉·누두흉·구흉 등으로 구분한다.

⑨ 눈은 시력·굴절이상 색신 및 안질에 대하여 검사한다. 시력은 만곡식 시력표(한국제)에 의하여 좌우를 각각 구별하여 5m 거리에서 검사하되 안경을 쓴 사람은 안경을 벗은 시력을 검

사하여 묶음표 속에 기입한다.

약시·설명 등도 두 눈에 대하여 기입한다. 굴절 이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바로보기·멀리보기·어리보기의 종류로 두 눈에 대하여 기입한다.

색시는 대한색신표로 검사하고 이상의 유무를 기입한다.

눈병은 특히 “도라코오마”에 주의한다. 국민학교 제 2학년 이하의 아동에 대하여는 시력·굴절 이상 및 색신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⑩ 귀는 듣는 힘 및 귀병에 대하여 검사한다. 듣는 힘은 적당한 방법으로 검사하여 장애의 유무를 기입한다.

귀병은 중이염에 주의하며, 전녕전쇄가 있을 때에는 귀병란에 기입한다.

국민학교 제 2학년 이하의 아동에 대하여는 듣는 힘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⑪ 코 및 목은 비후성비염·축농증·선양증식증·편도선 비대증 등에 주의한다.

⑫ 피부는 백선·개선 기타 전염성 피부 결함 및 머리 이등에 주의한다.

⑬ 이는 작은 이에 대하여 검사하고, 치료한 이, 아직 치료하지 아니한 이로 나누어 그 수를 기입한다.

학교 치과 의사·치과보건의사가 검사할 때에는 작은 이의 수는 이것을 다시 젓니 간니로 나누어 젓니에 대한 것은 묶음표 속에 기입하고 또 치열 이상 기타 이병에 대하여 주의한다.

⑭ 기타 질병 및 이상에 대하여는 호흡기 순환기·소화기·신경계통을 검사하며 전염병·누막염·심장질환(특히 류마치스성) 유무에 주의한다.

전향의 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학교 축탁의사가 결핵성 환자 유무의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정밀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로 보건기관에 위탁하여 이를 검사케 할 수 있다.

⑮ 정신상태는 정신병학적 및 심리학적 검사를 요하고, 특히 정신병학적 검사에 있어서는 유전성 전염병에 유의한다. 이 검사의 실시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검사할 수 있다.

⑯ 말은 발음 결함 기타 말 장애를 검사한다.

⑰ 신체검사 개평란에는 양호를 요하는 자에 대하여는 ‘요양호’라고 기입하고 양호를 요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양’이라고 기입한다.

(6) 체력검사

제 6 조

신체검사 중 체력검사는 다음 각호에 준거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달리기 100m 달리는 데 소요한 시간을 초단위로 기입한다<개정 문교 294>.

② 오래 달리기는 국민학교 남·여 어린이에 대하여는 600m, 중·고등학교 이상의 여학생에 대하여는 800m, 중·고등학교 이상의 남학생에 대하여는 1,000m 달리를 실시하고 그 소요된 시간을 초단위로 기록하되, 초미만은 받을림한다. 다만, 건강상태에 이상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오래 달리기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도움달기, 멀리뛰기는 두번씩 뛰어서 그 중에서 최장거리를 cm단위로 기입한다<개정 문교부령 제 294호>.

④ 쥐는 힘은 좌·우 두번씩 검사하여 그중 좋은 기록 하나만을 kg단위로 기입한다.

⑤ 턱걸이는 남자에게 실시하고 그 수를 기입한다.

팔굽혀 매달리기는 여자에게 실시하고 턱걸이한 채로 매달려 있는 시간을 초단위로 기입한다.

⑥ 왕복달리기는 10m거리의 반원 안에 놓여 있는 각목 두 개를 하나씩 집어가지고 출발선상의 반원안에 갖다 놓는 순간까지의 시간을 초단위로 기입한다.

⑦ 윗몸 일으키기는 누운 자세에게 발을 30cm 벌려서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고 두 손을 목 뒤에서 마주 잡은 다음 복근력을 이용하여 몸을 일으켜 두 팔꿈치가 무릎에 닿 때까지 앞으로 굽히는 동작을 30초 동안에 실시하여 그 회수를 기입한다. 이때 보조자가 피검자의 발목을 눌러준다.

⑧ 앞으로 굽히기는 의자에서 발끝을 5cm 벌려 선 다음 윗몸을 굽혀 두 팔과 손가락을 아래로 퍼서 자 위에 댄 다음 피검자의 손가락 끝의 위치를 확인 cm 단위로 기입하되, 의자면에

서 아래쪽을 +로, 위쪽을 -로 표시하며 2회 실시한 후 그 중 좋은 기록을 기입한다.

⑨ 던지기는 수류탄을 2번씩 던져서 그 중 좋은 기록을 미터단위로 기입한다<신설 문교 294>

⑩ 총점은 각 종목별 점수를 별표 1의 체력검사 기준표에 의거, 산출 기입한 후 그 총계를 기입한다<개정 문교 294>.

⑪ 체력급수는 총득점과 종목별 최저득점에 따라 연령별 성별로 별표 2의 체력급수 판정표에 의거, 판정급수를 기입한다<개정 문교 281·294>

제 7 조 삭제<1971.5.7 문교부령 제281호>

(7) 신체검사의 판정

제 8 조

신체검사를 한 때에는 새신체충실지수표에 의하여 신체충실지수를 산출하여 A. B. C. D. E.의 판정급수와 함께 기입한다<개정 1971.5.7 문교부령 제281호>.

(8) 기록

제 9 조

① 신체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국민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에 있어서는 건강기록부에 기타 학교 학생에 있어서는 별지 제 1 호 서식의 학생신체검사표에 그 결과를 기입하며, 교원에 있어서는 별지 제 2 호 서식의 교원 및 신체검사표에 그 결과를 기입한다. 건강기록부·학생신체검사표 및 교원신체검사표는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열람시키고 건강상담의 자료로 사용하는 동시에 이를 활용하여 허약자·형태 이상자에 대한 지도의 적정을 기하도록 한다.

② 전학할 때에는 전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국민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건강기록부를, 기타 학교에 있어서는 학생 신체검사표를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기록부는 고등학교까지의 상급학교에 전학하는 때에도 그 전학하는 상급학교 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개정 1971.5.7 문교부령 제281호>

(9) 신체검사의 결과 처리

제 10 조

학교의 장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업면제·휴학 또는 치료·보호·교정 등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교원의 경우 특히 전염성질환 또는 신체의 심한 허약 등으로 복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휴직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임면권자에게 건의하여야 하며, 건강상담·예방조치·기타 적절한 보호·양호의 대책을 그 학교가 소속하는 해당 지구 보건기관의 협조를 얻어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71.5.7 문교부령 제281호>.

(10) 검사결과에의 보고

제 11 조

신체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 3 호 서식 내지 제 7 호 서식의 신체검사 통계표를 작성하여 그해 7월말일까지, 국립학교 공·사립대학에 있어서는 문교부장관 및 보건사회부장관에게, 기타 학교에 있어서는 당해 지구 교육행정기관 및 보건행정기관에 보고한다.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보건행정기관은 전항의 보고를 접수하고 별지 제 3 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일괄하여 9월말일까지 문교부장관 및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한다.

(11) 입학 신체검사

제 12 조

전 각조에 의한 신체검사 외에 취학 또는 입학에 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2) 유아의 신체검사

제 13 조

유치원 유아의 신체검사에 대하여는 이 영의 검사항목에 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13) 대학 신체검사

제 14 조

국립대학 공·사립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이 영에 준거한 별도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4) 신체검사 미실시의 허용

제 15 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청의 인가를 얻어 이 영의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15)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1.5.7 문교부령 제28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2. 5. 1 문교부령 제294호)

2. 건강상담

건강상담은 학생들 자신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건강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욕을 개발해 주는 데 있다.

(1) 건강상담의 대상자

- 1) 건강관찰에서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 2) 건강검사(평가)에서 이상이 발견되어 요주의 또는 요관찰자로 인정된 학생
- 3) 질병, 허약 및 피로로 결석을 잘 하거나 하기 쉬운 학생
- 4) 학생 자신이 건강에 이상을 느껴 건강상담을 원할 경우
- 5) 교사나 학부모가 볼 때 학생의 심신상태가 건강상담이 필요하다고 느낄 경우
- 6) 사춘기 전후의 생리적 지도가 필요한 학생
- 7) 수학여행, 소풍, 체육회, 대외 운동경기 기타 단체활동에 참가하는 경우나 휴학중인 학생이 복학할 경우 등

(2) 건강상담 내용

- 1) 건강에 영향을 주는 가정과 가족문제
- 2) 이성관계를 중심한 성교육이나 성지도
- 3) 성격형성 문제
- 4) 정신보건문제 : 불평, 동요, 공포, 침울, 불안, 비굴감, 개성 파괴, 과민, 낮꿈, 과분한 보상 등
- 5) 신체건강문제 : 시력, 청력, 언어, 체격, 살갗, 자세, 빛, 영양, 비대증, 체중과소, 파로, 당뇨병, 간질, 심장병, 기타 일반적 건강장애 등
- 6) 취직과 관련된 건강문제나 활동력 등

3. 건강관찰

(1) 실시자

건강관찰은 학급 담임교사의 임무이지만 모든

교직원이 협조하도록 하고 양호교사는 교사들이 관찰을 잘 하도록 돕는다.

(2) 실시시간

건강관찰은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서 수시로 하되 아침 제 1 교시나 조회 때 하는 것이 좋다.

(3) 관찰내용

1) 일반상태와 외관

- 가. 기력이 없이 보이거나 약하게 보이는 학생
나. 안색이 창백하거나 충혈이나 황달이 있을 때
다. 자세가 나쁜 학생
라. 자칫하면 피곤하게 느끼는 학생
마. 열이 있거나 기침을 할 때
바. 호흡이 곤란할 때
사. 피부에 종기가 났을 때
아. 빈번히 코피를 흘릴 때
자. 자주 결석할 때
차. 성적이 불량할 때

2) 행동과 태도

- 가. 쉽게 흥분하거나 불안상태에 있다고 느낄 때
나. 주의력이 산만하거나 무질서할 때
다. 과도하게 도전적이거나 수치감을 갖을 때
라. 급작스럽게 초조감을 가질 때
마. 말더듬이 또는 기타의 언어장애가 있을 때
바. 아무 것도 아닌 일에 고통스럽게 느끼거나 비관적일 때
사. 기타 행동상의 문제, 즉 빈번하게 운다든지, 허언, 도적, 자만, 공포, 은익 등을 가지고 왔을 때

(4) 결과처리

- 1) 교사가 건강 이상자를 발견했을 때는 양호교사에게 보낸다.
- 2) 양호교사는 상세히 관찰하여 자신이 처리 가능하면 처리하여 학생을 교실로 보낸다.
- 3) 학생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교의의 건강진단을 받게 하든지 가정에 돌려 보내서

가정의 지도를 받게 한다.

4. 전염병 관리

학교는 단체생활을 하기 때문에 전염병 관리에 철저를 기울여야 한다. 전염병 관리는 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나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 학교 전염병의 관리 원칙

1) 제 1종의 전염병과 나병에 걸린 직원·아동 등은 원칙 전에 등교시켜서는 안된다. 제 1종 전염병의 병원체를 보유한 자는 그 병원체가 소실한 후라야 등교하게 된다.

2) 콜레라, 디프테리아 및 유행성 뇌척수막염은 24시간 이상, 이질과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는 48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어 채취한 검사 자료를 가지고 세균학적 검사를 시행하여 2회 이상 병원체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을 때는 병원체는 소실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제 2종의 전염병에 걸린 직원과 아동은 원칙적으로는 등교가 금지되지만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교해도 무방하다. 즉,

가. 백일해에 있어서는 특유한 해소가 소실된 자.

나. 마진에 있어서는 주요 증상 쇠퇴 후 7일을 경과한 자.

다. 유행성 이하선염에 있어서는 이하선의 종장이 소실된 자.

4) 제 3종의 전염병에 걸린 직원·학생 등은 등교를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지 문제에 있어 난점이 많으니 결핵·나병 등은 학교의 지시를 잘 받도록 한다.

5) 제 1, 2종 전염병 환자가 학교 직원 또는 아동의 가족 증에 있을 경우는 교의의 지시를 잘 받아 전염 유무를 검토하여 등교여부를 결정한다.

6) 교직원은 학교내에 있어서 제 1종 전염병이나 그 유사증으로 인한 사망자를 발견하였을 때는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즉시 당해 교의의 진료 또는 검안을 구하거나 소재지의 특별시장, 시·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학교 내 또는 학교 소재지 부근에 있어 제 1종 또는 제 2종 전염병이 발생하여 그 상황으

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교장은 상부 관청에 연락을 취하는 등시 교의의 의견을 들어 휴가 조치를 할 수 있다.

8) 학교장은 전염병 예방의 견지에서 평상시는 물론, 전염병 예방시는 특히 환경위생의 개선에 유의할 것이며, 다음 사항이 권유된다.

가. 변소에 세수용수와 비누를 비치할 것
나. 공동으로 쓰는 수건을 없앤다.

다. 숙직용 기타의 공동 칩구 사용에 있어서의 개인별 시이트의 준비 및 상용
라. 담뱃통의 배치 및 담의 위생적 처리

5. 결핵관리

전염병 관리 중 학교에 있어서 결핵관리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결핵관리는 결핵 예방법에 따르지만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1) 결핵의 감염 방지

1) 정기적으로 매년 2회의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가. 전교생의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
(tuberculin test)

나. 투베르쿨린 양성자에 대한 X-레이 사진 간접 촬영

다. 간찰 후 유소견자에 대한 X-레이 사진 간접 촬영

라. 직할자의 객담 검사

마. 투베르쿨린 반응의 음성자에 대한 비이·시이·지(B.C.G) 접종(청기적)

2) 개방성 결핵 환자의 격리(등교 정지)

(2) 결핵 감염자에 대해서는 그 발병 방지에 협력한다.

1) 규칙있는 생활의 실천

2) 합리적인 영양 섭취

3) 충분한 수면과 적당한 휴양

4) 신선한 공기와 일광

5) 위생적인 생활환경의 유지

6) 건강상태에 적합한 운동과 학습 작업을 시킨다.

(3) 환자에 대한 지도

환자는 보건소에 위촉하여 가정에서 통원 치료를 받게 한다. 편의상 생활면과 의료면에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취급하는 것이 좋다.

1) 생활면(절제)

- 가. 요 휴양 : 수업을 쉬어야 될 자
- 나. 요 경업 : 수업의 제한을 요하는 자.
- 다. 요 주의 : 수업을 거의 평상시와 같이 할 수 있는 자.
- 라. 건강 : 전적으로 평상시 생활을 해도 좋은 자.

2) 의료면(지도)

- 가. 요의료
- 의사에 대한 직접적인 의료 행위가 필요한 자
- 나. 요관찰
- 의사에 의한 직접적인 의료 행위를 요하지는 않으나 정기적인 의사의 관찰지도가 필요한 자.
- 다. 건 강
- 의사에 의한 직접 간접적인 의료행위를 전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 자.

라. 기 타

학교 당국에서는 학생들은 물론 그들을 통하여 각 가정에까지도 결핵에 대한 보건교육을 전하게 할 것이며, 교직원 중에 결핵환자가 없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저학년에 있어서의 투베르쿨린반응(T-test)) 양성자를 통한 가정에 있어서의 결핵환자 유무 조사도 참고가 될 것이다.

6. 보건실(양호실)

보건실은 보통교실의 면적이면 적당하며 의무실과 휴양실 그리고 환경관리실로 구분한다.

한정하고 채광 통풍이 잘되는 곳을 택해서 설치한다. 보건실에는 신체검사, 신체계측, 진료용 기구, 약품, 안정대 등이 정비되어 있어 청결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보건실 옆에는 병자나 허약자가 수시 안정할 수 있는 휴양실이 부설되어 있어야 한다.

환경관리실에는 환경위생측정용 기구로서 간단한 수질 검사 시설, 의료용 약품, 위생약품, 환경위생교육 기재, 식품 분석표, 저울 등이 비치되고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환경위생측정용 기재 등이 비치되어야 한다. 보건실의 의무실과 휴양실은 교의와 양호교사가 관리하며 환경관리실은

학교 약사가 관리한다.

7. 기타 교실

과학실·도서실(판)·가사실·공작실·미술실·음악실·강당 등이 있고, 강의실·수영장·육탕·식당·창고·취사장·기숙사 등도 각각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III. 學校給食

1. 학교급식 관계법

학교급식의 중요성에 비추어 불연 학교급식법이 제정될 것으로 본다. 현재는 학교 급식규칙(문교부령 제401호, 1977.1.14 공포)에 의해서 학교급식이 시행되고 있다.

(1) 학교급식의 목적

제 1 조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학교 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이하 “학교급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각급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촉진하고 유능한 국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2) 학교급식의 운영 원칙

제 2 조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하되, 아동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양식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즉 영양식품은 한국인 1일 영양권장량에 비추어서 1식(점심) 열량 700cal, 단백질 25g(동물성 gr), 지방 gr, 칼슘 mg, 비타민 A I.U., B₁ mg, B₂ mg, C mg을 말한다.

(3) 학교급식의 종류와 내용

제 3 조 ① 학교급식의 종류는 보호급식, 일반급식, 실험학교급식으로 하되, 보호급식은 요보호 아동을, 일반급식은 비용 부담 아동을, 실험학교급식은 실험학교에 재적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 1 항의 학교급식은 지역 실정과 급식대상